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(이석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5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5월 27일

발 의 자 : 이석주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제리, 김태수, 박상구,
송아량, 양민규, 이영실,
이태성, 전석기, 홍성룡,
황규복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등 재난 상황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범위 및 감액 조정 비율 확대 등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등과 관련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의 감경 범위 및 감액 조정 비율 확대

1) 지방자치단체 귀책사유 등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감경 대상 범위를 확대(안 제28조)

2) 연간 사용료·대부료(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 등을 말한다)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에, 100분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감액률을 현행 100분의 70에서 전부 감액으로 조정(안 제30조)

나.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의 납부 부담 완화

1)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·대부료에 대하여 연 4회의 범위
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 6회의 범위로 분할납부
횟수 확대(안 제31조)

다. 기타 용어 정비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없음(비대상사유서 첨부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첨부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 중 “(대부료의 감면)” 을 “(대부료 등의 감면)” 로, 본문 제3호의 “제13조제9항” 을 “제13조의2제3항” 으로,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,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·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(이하 이 조에서 “대부료 등” 이라 한다)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사용·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
2.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대부료 등의 100분의 50
3.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

제30조 중 “(대부료의 조정)” 을 “(대부료 등의 조정)” 으로, “연간대부료가 전년도 연간대부료” 를 “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(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 등을 말한다)가 전년도” 로, “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.” 를 “전부를 감액조정한다.” 로 한다.

제31조 중 “(대부료의 납기)” 를 “(대부료 등의 납기)” 로, 제2항제1호의 가·나를 삭제하고, 제3항의 “재해” 를 “재난으” 로, 제2항제1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: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3조(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2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8조(대부료의 감면) <신 설>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<u>제13조제9항</u>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: 대부료의 100분의 30</p>	<p>제28조(대부료 등의 감면)</p> <p>① <u>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·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(이하 이 조에서 “대부료 등” 이라 한다)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<u>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사용·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. <u>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3. <u>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</u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제13조의2 제3항</u> ----- ----- -----</p>

제30조(대부료의 조정)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에, 100분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.

제31조(대부료의 납기)

① (생략)

② (생략)

1. 연간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
가.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: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할납부

나. 200만원 초과 : 9개월 이내 4회

범위에서 분할납부

2. (생략)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,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30조(대부료 등의 조정) -----

-----연간 대부료 또는
사용료(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31조
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
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
연간 대부료 등을 말한다)가 전년도--

----- 전부를
감액조정한다.

제31조(대부료 등의 납기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1.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100만
원을 초과하는 경우 : 연 6회의 범위
에서 분할납부

가. ~ 나. (삭제)

2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재난으-----

④ (현행과 같음)